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제 1 조 적용 범위

1. 이 특약은 「하나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 거래에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2. 이 적금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1.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합니다.
 -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이하인 자
 - 가. 「병역법」 제 16조 또는 제 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 21조, 제 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 나. 「병역법」 제 26조 제 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②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주1)}을 충족하는 자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1)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자
 -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 나. 가구원^{주3)}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이 불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합니다)

※ 주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3)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구원을 확정합니다.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4)}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주4)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2.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 2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3.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4. 이 적금은 이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합니다.

제3조 신청 및 가입

이 적금은 신청 후 제 2조의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합니다.

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자유적립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 해지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1. 이 적금은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의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주5)} 납입한도는 8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5) (예시) ‘23.7.10일 가입 시

1년차(‘23.7.10~‘24.7.9), 2년차(‘24.7.10~‘25.7.9), 3년차(‘25.7.10~‘26.7.9), 4년차(‘26.7.10~‘27.7.9),

5년차(‘27.7.10~‘28.7.9)

2. 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금액은 당월(입금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만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이 가능합니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1. 이 적금의 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경과 시점의 고시된 기본금리로 1년단위 변동 적용됩니다.
2. 이 적금의 만기금리는 제1항의 기본금리에 제 7조의 우대금리를 합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3.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4.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제 2항의 만기이자에 더하여 지급 합니다.
5.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제 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 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한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대항목	내용
급여(가맹점 대금) 이체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주6)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카드 결제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목돈마련 용원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마케팅 동의	이 예금 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소득*플러스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u>소득요건 충족</u> ^(주7)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주6) 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월급,연봉,봉급,상여, 성과, 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 주7)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제8조 세율의 적용

1. 제 5조에 따라 납입된 저축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 ①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2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하 “과세특례 요건”이라 합니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②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③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3. 제 10조 제 5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 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②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이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 99조 제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 2조 제 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 정부기여금은 「서민의 금융생활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이 제 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 ①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 ②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2. 정부기여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3. 제 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제 5조에 따른 매월 및 연간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정부기여금은 은행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
 5. 정부기여금 지급 시 제 6조 제 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6.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

1. 제 10조 제 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5회)에 따라 결정되며,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주8)}됩니다.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주8)}됩니다.

※ 주8)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1년차(‘23.7.10~’24.7월), 2년차(‘24.8월~’25.7월), 3년차(‘25.8월~’26.7월), 4년차(‘26.8월~’27.7월), 5년차(‘27.8월~’28.7.9)

2. 제 1항에 따른 개인소득 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소득 중 제 10조 제 2항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가장 낮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2조 재가입 등

1. 이 적금은 중도해지(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2. 중도해지(제 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시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9)}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9)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제13조 기타

1.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자의 제 2조 제1항 제1호의 나이요건, 제 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기준, 제 11조의 개인소득금액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4.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 10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특약은 2023년 7월 10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